

# 명예퇴직규정

제정 : 2014.03.01  
개정 : 2014.11.01  
개정 : 2016.11.11  
개정 : 2018.09.13  
개정 : 2020.03.01  
개정 : 2020.09.01  
개정 : 2021.02.08  
개정 : 2021.12.01  
개정 : 2022.04.11  
개정 : 2023.10.16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0.03.01.>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퇴직일 현재 정규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물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## 제2장 명예퇴직수당

제3조(명예퇴직의 대상) ① 퇴직일 현재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1.1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② 총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하다면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에게 명예퇴직자에 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1., 2018. 09. 13., 2021. 02. 08., 2021. 12. 01.>

③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. <개정 2016.11.11., 2018.09.13.>

제4조(근속년수의 계산) 근속년수의 계산은 법인 산하 본 대학교 및 자매기관에서 근속한 일부터 기준하여 명예퇴직예정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명예퇴직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1.12.01.>

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
3.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
4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
5.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21.12.01.>
6.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

제6조(공지)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명예퇴직의 신청)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신청서를 퇴직예정일 90일 전까지 교원은 교무처장, 직원은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원활한 학사운영 및 행정부서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, 2018.09.13., 2020.03.01., 2020.09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명예퇴직 취소신청서를 교원은 교무처장에게,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9.01.>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8조(지급심사·결정) ① 총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혹은 직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심의·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2.08., 2021.12.01.>

1.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있는 교직원(「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과 종합병원장의 진단서를 참조) <개정 2021.12.01.>
2. 장기근속 교직원
3. 상위직 교직원

제9조(지급대상자 통지)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정의 취소)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청기간 이후부터 퇴직 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정을 취소한다. <개정 2018.

09. 13.>

제11조(사직원 제출)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1.12.01.>

제12조(수당 지급액)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교직원의 수당지급액은 [별표1]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1.02.08.>

제13조(수당의 수령권자) ①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수령권은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수당의 환수)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취업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<삭제 2022. 04. 1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1]

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월평균임금의 반액 × 정년잔여월 수
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월평균임금의 반액 × $(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)$
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)

[별 표2]

## 명예퇴직 신청서

소 속	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 원	직 급	
				직 위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
주 소				전화번호	
근속 년수	임용일자 : . . .	정년예정일 : . . .	정년 잔여 : 년 개월		
<p>대원대학교 명예퇴직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 . . 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신 청 인 : (인)</p> <p>대원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	
* 교직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		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퇴직 불가			

[별 표3]

## 명예퇴직 취소 신청서

소 속		구 분 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 원	직 급	
			직 위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주 소			전화번호	
<p>상기 본인은 명예퇴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</p> <p>년 월 일부로 명예퇴직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20 . . .</p> <p>신 청 인 : (인)</p> <p>대원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